

사직단유적 복원사업관련 현황청취 및 현지조사

결 과 보 고 서

1. 조사경과

- 1995. 3. 7 「사직단유적」 복원사업관련 현지조사계획안 발의
⇒ 총무위원회 최인덕위원외 4인
- 1995. 3. 7 총무위원회 집회소집 요구
- 1995. 3.13 총무위원회 회의개최 (제2회임시회 제2차 회의)
 - ① 집행기관 관련부서로부터 추진경위보고 및 현지조사
 - 주택과 : 건축민원사항 보고
 - 지적과 : 토지거래허가 관련사항 보고
 - 문화공보담당관실 : 「사직단유적」관련사항보고
 - ② 현지답사 : 삼척시 원당동 사직단유적 현지
 - ③ 삼척 향토사학연구 관련인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
 - 일 시 : '95. 3. 14 (화) 10:00
 - 장 소 : 삼척시의회 의원사무실
 - 참 석 : 총무위원회위원 7명, 향토사학연구관련인사 3명
 - 주요내용 : 「사직단유적」복원관련 의견청취
- 1995. 3.14 결과보고서 심사체택 (제2회 임시회 제3차 회의)
- 1995. 3.16 전체의원 간담회시 보고

2. 향토사학연구관련인사 주요의견

- 「사적단유적」은 신앙의 근원지로서 원칙적으로 원형대로 보존해야 함.
- 삼척시에서 이전복원의 당위성만 주장하지 말고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지정 신청, 현 아파트건립부지의 시유지 대토방안 검토, 원상복원에 따른 재원조달방법 등 다각적인 복원방안등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임.

3. 총무위원회 위원 의견

- 본사항은 삼척시군통합이전인(구 삼척시) 1992년도에 삼척시에서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전통문화도시조성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납품받아 본 계획에 의거 문화유적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항으로써, 1994년 11월 삼척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해줌으로써 민원이 발생함.
- 본 사안은 토지거래허가당시에 사전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되었다면 오늘과 같이 민원이 발생치 않았을 것이며, 또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용역계획수립과 기반시설사업을 기추진 하였음에도 아파트건립부지로서의 토지거래허가등 원인을 제공한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소재를 묻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민원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집행기관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 아파트건립부지 대토방안, 아파트건립부지 매입비 20억 확보방안 등 다각적인 사업비확보방안을 강구한 후 건축허가여부를 재검토 하여야 할 것이며,
-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사안에 대한 민원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이 집약됨.